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허창원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3월 3일
-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노인복지관의 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나. 이용대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다.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라. 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마. 노인복지관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노인복지관” 이라 함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, 1998년 4월 17일 개관 시점부터 2005년 1월 12일까지는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에서, 2005년 1월 13일부터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학교법인 충청학원에서 위탁 운영 중임.
-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노인복지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 - 본 조항은 노인복지관의 주요업무가 노인 욕구(needs)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, ‘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’ 를 통해 사업 구분이 구체화된 것을 감안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현행	개정안
제3조(사업 및 기능) 1.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사업 2. 노인평생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3.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의료 재활 사업 4. 취미생활,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 여가증진 사업 5.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	제3조(업무) 1. 상담 및 정보제공 2.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3. 건강생활 지원 4. 노년 사회화 교육 5. 지역자원 개발 및 복지 연계 6.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7. 고용 및 소득지원 8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

○ 안 제5조는 해당 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해당 범위 외에 ‘노인복지 관련 기관·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’ 를 추가로 포함시킴.

- 노인복지관 시설은 충청북도의 행정재산으로 충청북도 노인복지사업의 광역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, 본 개정안에서 ‘노인복지 관련 기관·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’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6조는 노인복지관 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- 현행 조례에서는 공유재산(건물, 토지 등)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위탁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기간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- 본 시설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며,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인 바,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본 법을 적용해야 할 것임.

- 이에,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 선정에 있어 ‘공개모집’ 방식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고,
-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인용 문구를 삭제하며,
- 위탁계약기간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탁운영 등) ② <u>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</u>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③ <u>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,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/u></p>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○ 안 제8조는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1항에서도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8조(고용승계)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○ 안 제9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현행 조례의 ‘도지사는 조사·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’는 임의규정을, 본 조례안에서는 ‘~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’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음.

현행	개정안
제8조(조사 또는 검사 등)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<u>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	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등 <u>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
○ 안 제10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이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3항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8조를 준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8조(위탁의 취소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
 2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
-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○ 안 [별표] 사용료 기준표(안 제4조제3항 관련)에서는, 노인복지관의 식당 메뉴 가격을 삭제하였음.

※ [별표] 삭제 내용: 정식 2,500원, 국수 1,500원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1조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식당 메뉴를 공공시설의 사용료로 보기 어렵고, 가격 또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바, 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,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
○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없음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현황

□ 일반현황

- 근거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~ 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)
- 소재지 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 (사직1동)
- 시설규모 : 부지 11,985㎡ / 건축 4,023.78㎡ (지하1층, 지상3층)
- 운영주체 : 학교법인 충청학원 (이사장 박규일, 관장 김준환)
- ※ 위수탁 계약 (5년, 공개모집) : 2017. 1. 13 ~ 2022. 1. 12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'98. 4. 17일 개관 ('97. 12. 14 준공) ▷ 도 노인회 위탁 : 2년 주기 3회 (수의계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~ 3차 : '99. 1. 13 ~ '05. 1. 12 (6년) ▷ 학교법인 충청학원 위탁 : 3년 주기 3회 (공개모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차 ~ 7차 : '05. 1. 13 ~ '17. 1. 12 (12년)
--

- 이용현황 : 등록 회원수 9,554명, 1일 평균 이용인원 1,000여명
- 종사인원 : 24명(비상근 1, 상근 23) ※ 비상근(무보수) : 관장 김준환

상 근 : 23 (정규직 13, 무기계약직 3, 계약직 7)															
사무국 : 2		총무과 : 13 (정규 6, 무기 3, 계약 4)								복지과 : 8 (정규 5, 계약 3)					
부관장	부장	과장	팀장	사회복지사	영양사	관리사	조리사(무기)	환경미화원(무)	노인출발요원(계약)	팀장	대리	사회복지사	상담사(계약)	노인차량전담(계약)	돌봄코디네이터(계약)
1	1	1	1	2	1	1	2	1	4	1	1	3	1	1	1

□ 산출내역

- '20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% 적용
 - 급여(473,139천원), 제수당(61,383천원), 퇴직적립금(45,393천원), 사회보험부담금(55,094천원) 등

□ 주요사업 : 11개 사업, 173개 프로그램

광역중심 도 노인복지관 역할강화	지역중심 노인복지관 역할수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상담·정보제공 및 정서·사회생활지원사업(7개) ▷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사업(21개) ▷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(24개) ▷ 노인권익증진사업(6개) ▷ 지역복지연계사업(3개) ▷ 지역복지협력사업(4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평생교육지원사업(48개) ▷ 취미여가지원사업(14개) ▷ 사회참여지원사업(12개) ▷ 건강증진지원사업(16개) ▷ 지역자원개발사업(18개)
6개 사업 65개 프로그램	5개 사업 108개 프로그램